

언론에 대한 공중의 기대와 언론윤리강령에 나타난 윤리기준

S. 브라만

이 글은 「Journalism Quarterly」(1988년 봄호)에 실린 Sandra Braman(미국 쉐저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의 「Public Expectation of Media Versus Standards in Codes of Ethics」를 번역한 것이다.....편집자 주

I. 문제제기

언론의 윤리강령에 관해 국민과 언론, 정부등의 삼자가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바람직한 실천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들 삼자는 과연 어느 정도의 견이 일치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특히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언론의 실천기준이나 혹은 윤리강령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관심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었다. 본연구는, 전국뉴스평의회 (National News Council-이하 NNC로 칭함)에 제기된 바 있는 불만호소건을 통해 언론인들의 윤리강령실천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를 검토하고, 나아가서는 이것을 언론사 스스로 마련해 온 윤리강령상의 실천기준과 비교해 봄으로써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드러난 공백을 지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일차적인 연구목적이 있다. NNC에 제기된 불만호소건(complaints)의 분석만으로는 결코 통계적으로 신뢰할만한 자료와 연구결과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자료의 분석을 통해 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바의 제차원을 시사받을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서는 보다 엄격한 조사방법을 개발하는 데 있어 하나의 연구도구로서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비교연구를 통해 윤리실천기준에 대한 언론사측의 입장과 국민들의 기대치가 어떤 점에서, 어느 정도 괴리를 보이고 있는지를 밝힐 수 있게 될 것이다.

II. 연구의 배경

언론의 윤리강령문제가 또 다시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된 데는 그럴만한 몇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하나는, 당연히 언론의 윤리문제에 대한연구의 증가로 인해 관심의 대상으로서 부각된점일 것이다. 그러나 두번째로는 1982년 전국방송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Broadcasters-이하 NAB)의 윤리강령이 반트러스트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해럴드 그린(Harold Greene)판사의 판결로 인해 방송매체측이 윤리강령을 전면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법원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불편부당보도(neutralreportage)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서 매체나 방송매체 양이자 모두에게 언론활동에 대한 정부의 개입가능성을 상기시켜 주고 있다는 점일 것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언론의 신뢰도문제가 언론경영과 국민의 여론조사를 통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역사적으로 바라봤을 때 미국의 경우 언론의 윤리강령은 기본적으로 두 연대를 통해 발전해왔다. 그 첫째 연대는 주 단위로, 지역단위에서의 검열위원회 (censorship board)뿐만

아니라 전문성 (professionalism)과 기업결합 등의 문제가 대두되었던 1920 년대를 통해서였고, 두번째연대는 워터게이트사건을 경험한 1970 년대를 통해서였다. 이 두 연대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라는 문제 외에도 전국산업 부흥법(Nation4Industrial Recovery Act)과 전시업무수행법(Code of Wartime Practices)의 영향문제를 포함한 이러한 강령의 마련에 미칠 다양한 영향력의 문제가 거론되었고, 전면적인 검열은 아니라 하더라도 추후 정부의 간섭에 대한 우려, 그리고 P.R에 대한 관심, 산전에 대한 우려의 문제, 그리고 제도화 과정 그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거론되었던 것이다. 피터슨(Peterson)이 윤리강령을 마련했다는 사실은 데스몬드(Desmond)가 제시한 개념인 사회책임이론을 지향하는 언론의 자유주의 이론을 수용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서 널리 지배적인 경향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윤리강령과 이것을 얼마나 실천했는지와의 관계를 살핀 연구도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4 개의 윤리강령을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홍보, 광고, 영화, 만화책 등 윤리강령을 마련해 두고 있는 많은 언론산업중에서도 굳이 인쇄매체와 관련된 2 개의 강령와 방송매체와 관련된 2 개의 윤리강령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 매체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1923 년에 미국신문편집인협회(ASNE)에서 마련한 저널리즘의 규범 (Canonsof Journalism)은 특정한 신문사나 특정한 주제만 국한되지 않는 최초의 윤리강령으로서, 1975 년에 개정된 바 있다. 그리고 SPJ, SDX 의 윤리강령은 모든 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1973 년에 채택된 것이다. 이 강령들은 ASNE 의 윤리규범을 모델로 삼은 것이긴 해도 SPJ 와 SDX 의 강령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준칙사항들을 마련해 놓은 것이다. 전국방송인협회(NAB)의 라디오부분의 강령은 1930 년대에 이미 마련되어, 이 연대를 통해 두차례나 개정된바 있다. NAB 의 텔레비전 부분의 강령은 1952 년에 처음으로 채택된 바 있고, 이것은 이미 1930 년에 마련된 바 있는 미국 영화제작 및 배급업자들의 영화제작강령을 크게 참작한 것이었다. NAB 의 강령들은 과거 여러 차례 개정된 바있는데 지난 1980 년에 TV 부분의 경우 21 차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고, 라디오부분의 경우는 22 차 개정안을 채택한 바 있었다. 이들 개정안들은 FCC 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송인들의 규정에 부응하려는 듯 보다 구체화시키고 세부준칙을 마련하는 경향을 보여준 것이었다.

1973 년에 설립된 전국뉴스평의회(National News Council)는 시민과 언론사측의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언론을 상대로 제기된 불만호소를 조사하고 판단하는 광장이었다. NNC 에게는 강제력은 없었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 권고활동을 통해 기여한 바 있었다. 전국적인 주요 언론사의 지원부족과 지도력의 부족등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설립 10 년만에 문을 닫은 바 있다.

지난 10 년 동안 NNC 에서는 총 242 건의 불만호소를 조사해서 처리한 바 있다. 이러한 숫자는 NNC 에서 접수한 총 건수의 1/6 에 해당하는 것이다. 나머지 처리되지 않은 불만호소는 대개 전국적인 매체가 아닌 지역적인 매체를 대상으로 한 불만호소일 경우 그리고 평의회에서 처리하기 힘든 어구로 작성된 불만호소일 경우(상당수의 불만호소가 실제로 에세이처럼 작성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여타의 이야기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었다), 아니면 평의회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절차상의 요건에 부합되지 않은 불만호소였다. 이러한 절차상의 요건을 보면 평의회에서 처리한 불만호소를 가지고 추후 법률적인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소송포기 각서를 제출하도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불만호소의 대상이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최소한의 증거물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이러한 절차상의 요건을 갖춘 불만호소가 접수되면 평의회에서는 1980년에 있었던 자네트쿠크기자의 허위기사사건처럼 그 출처를 확인하기가 어렵긴 해도 전국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세차례에 걸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검토를 실시하기도 했다.

NNC에 제출된 불만호소는 자체적으로 선별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일부 연구에서는 불만호소를 통해 언론사측에 피드백을 일반국민들은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었으며 또 어떠한 동기에서 불만호소를 하게 되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것도 있었다. 한편 샤퍼(Schafer)가 행한 몇몇 연구의 결과를 보면 제기된 불만호소(이러한 사례에는 물론 평의회측에서 언론사측에 불리하게 평결한 사례도 포함)의 분석결과, 설립 후 몇년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해당조직에 유리하게 평결이 났음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든 국민들은 언론사측에 유리하게끔 어느 정도 편향된 평결이 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국민들은 평의회의 활동이 장기적으로 언론의 개선보다는 언론사측을 옹호하는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샤퍼의 두번째 연구에서도 법정에서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 뉴스평의회에서는 언론사측에 변호의 기회를 주는 사안으로 처리되고 있었다는 유사한 결론을 제시하기도 했다.

III. 연구방법

전국뉴스평의회에 제출된 불만호소인들의 서류에서 주장되고 있는 윤리규범과 언론인들이 제정하고 있는 윤리규범 즉 ASNE의 윤리강령, SPJ, SDX의 윤리강령, NAB의 라디오부문강령, NAB의 TV부문강령에서 나타나 있는 윤리규범 비교해 보았다.

언론의 윤리강령에 나타나는 규범은 강령 그 자체에서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불만호소인이 보는 윤리규범은 불만호소인들이 전국뉴스평의회에 제출한 서류에 나타난 주장을 분석의 단위로 삼았다. 그리고 불만호소인들의 서류는 언론사측이 나 NNC에서 주장하는 논조나 그 사용하는 용어, 내용의 범주면에서 가장 순수한, 그리고 실제 국민의 기대치를 가장 잘 표현해 주고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중심으로 추출하였다.

이러한 분석단위를 고려한 결과, 이 연구에 유용한 서류는 NNC측에서 조사한 불만호소건중 약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몇 불만호소인의 서류는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도 있었다. 따라서 몇몇 다른 불만호소인의 서류를 1회 이상 근거자료로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밝혀두고 지나가야 할 사항은, NNC에서 행한 조사건수 중 몇건의 사례는 불만호소에 의해서가 아니라 NNC가 자체적으로 심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불만호소서류의 내용을 보면 그곳에서 제시되어 있는 윤리규범이 2가지에서 많을 때는 8가지가 제시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불만호소에서 나타나는 주장들을 모두 하나씩으로 계산하였다.

IV. 연구결과

NNC에 제기된 불만호소인의 서류 혹은 언론사측에서 제정한 윤리강령에 나타난 언론활동에 관련된 규범을 총 집계해 본 결과 180가지였다. 이들 윤리규범은 총 9개 내용범주로

분류될 수 있었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참고로 괄호안의 숫자는 각각의 해당하는 윤리규범을 거론한 NNC에 제기된 불만호소 건수를 말하는 것이다).

1. 언론의 역할에 관한 규범

국민이 언론의 역할에 거는 기대는 주로 언론활동의 공익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언론의 윤리강령에서는 언론의 전향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은 언론의 영향력을 제한하고 조정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 해당되는 24가지 규범중에서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 「정부를 비판해야 한다」와 같은 역할을 강조하는 10개 규범항목은 오직 언론의 윤리강령에서만 거론되고 있었고, 「사건을 만들어내지 말아야 한다」 「여론을 조작하지 마라」와 같은 성격의 8개항목은 주로 국민의 견해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을 빈도수의 순위별로 나열해 보면 NNC에 접수된 불만호소건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항목은 「언론을 이용하지 마라」(13)였으며 그 다음이 「여론을 조작하지 마라」(9),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라」(4), 「사건을 조작하지 마라」(3), 그리고 「사건을 만들어 내지 마라」(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언론의 윤리강령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았던 항목은 「진실을 추구하라」와 「공익에 기여하라」였다.

2. 언론의 영향력과 관련된 규범

언론의 영향력에 관련되는 항목은 8개로 분류 될 수 있었다. 국민들은 언론에 대해 뉴스의 대상이 된 인물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가장 빈도가 높았으며(15), 그 다음이 독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라는 내용, 「차별의식이나 편견을 포장하지 마라」(10),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야 한다는 것(5),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4),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1)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이 기대하고있는 규범중에서 「언론이 독점적 위치에 있을 때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는 항목은 언론윤리강령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인쇄매체의 윤리강령에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언론의 책임과 관련된 항목을 찾아 볼 수 있었지만 방송매체의 윤리강령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방송매체의 윤리강령에서는 FCC의 영향력을 감안, 언론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상세한 내용을 항목으로 설정해 두고 있었다.

3. 사실보도와 관련된 규범

NNC에 제기된 불만호소건이나 언론의 윤리강령에서 가장 공통적으로 관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난 항목은 사실보도에 관한 것이었다. 사실보도에 관련된 34개의 서로 다른 규범항목들을 집계해 본 결과. 언론의 윤리강령에서는 나타나고 있으나 국민들이 언급하고 있지 않은 항목은 3개에 불과했고, 18개항목에서는 국민들은 언급하고 있으나 언론의 윤리강령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었다. 이러한 규범항목들을 빈도수의 순위로 배열해 본 결과, NNC의 불만호소에서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는 항목은 「사실 그대로 정확하게 보도하라」(53)였으며, 그 다음이 「가능한 한 모든 사실을 밝히라」(23), 「통계자료를

조작하지 마라」(22)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지 마라」(20), 「모든 사실을 확인하라」(29), 「정정보도하라」(15), 「출처를 확인한 사실만을 보도하라」(13), 「허위보도를 하지 마라」(1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규범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는, 사실보도라는 개념의 인식에 있어 국민과 언론사간에 몇 가지 항목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첫째 국민들은 「하나의 기사」나 「뉴스」를 구성하는 하나의 확고한 사실의 집합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국민들은 언론을 평가할 때 이들이 「모든」 사실을 보도했느냐의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같았다. 한편 언론인들은 기사나 뉴스의 사실을 어떤 확고한 것이거나 또는 일정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는 않았다. 이처럼 「뉴스나 기사에서 드러나는 사실들은 서로 일치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항목이 국민이 개대하는 규범항목으로서는 다섯차례나 등장하고 있었지만 언론의 윤리강령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그 예라고 하겠다.

두번째로 그 차이점을 든다면 국민은 언론에 비해 훨씬 더 사실의 부정확한 보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국민들은 「허위보도를 하지마라」(13)와 같은 규범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반해 언론측에서는 「각색해서 보도하지마라」(6)를 더 선호하는 규범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의 표현은 편견문제를 강조한 것이라면 후자는 보다 중립적인 역할을 시사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세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차이점은 국민들은 언론에 비해 출처와 정정보도와 관련해서 보다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들은 「출처를 확인하라」(4)는 정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에 언론의 윤리강령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이러한 차이는 「정정보도는 원래 문제가 된 기사와 동등한 비중으로, 동등한 위치에 게재해야만 한다」(5)는 항목에서도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민과 언론을 저널리즘의 도구라고 할수 있는 중립성을 보는 시야에서도 차이를 드러낸다. 국민은 중립성이란 것이 설득적인 목적에 기여 할 수 있고 또 사실상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있는 반면에 언론인들은 중립성을 뉴스수집의도구로 주장한다는 점이다.

4. 사실의 논리와 관련된 규범

이 범주의 항목에서도 국민과 언론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들을 수집해서 그것을 기사로서 구성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해설의 논리에 대해 국민은 커다란 관심을 보여 주고 있는데 반해 언론측의 관심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18개의 규범중에서 언론의 윤리강령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두가지에 불과했다. 국민은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오류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다 이것을 빈도수로 배열해 보면 「소수의 사례로 일반화를 시도하지 마라」(13), 「정보원의 발언을 전후 사정에 맞지 않게 취급하지 마라」(11), 「복잡하기 짝이 없는 문제를 지나치게 단순화시키지 마라」(9), 「근거없이 비난하지 마라」(6), 「비교할 때에는 타당성있게 하라」(4), 「가장 중요한 기사문장을 악용하지 마라」(3)로 나타났다. 어느 불만호소인의 경우는 뉴스기사에서 등장하는 논증자료를 선택하게 되는 근거를 알고 싶다는 이야기를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상당수의 불만호소인들은 「올바른」 해설의 논리를 전문가나 혹은 관리들의 해설논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전문가들이 하듯이 사실들을 해설하라」고 주장한

사람이 11 명이었고, 「당국이 발표한 사실대로 해설하라」 고한 사람도 5 명이었다. 언론인들에게 「사실을 오도하지 마라」 (10)는 충고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5. 사실수집절차와 관련된 규범

사실보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범주에서도 국민은 언론에 비해 훨씬 더 상세하게 규범을 논의하는 수준에 올라와 있었다. 이 범주에 해당하는 총 25 개 항목가운데서 국민은 언급하고 있으나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이 16 개 항목이었고, 국민은 언급하지 않았으나 언론측에서 언급한 것은 4 개 항목에 불과했다.

국민들은 사실을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 그 성실성(8)과 인터뷰방법(4)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언급한것을 예로 들어 보자면

「인터뷰도중에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마라」 (1)는 것이 그것이다. 정보원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가능한 한 모든 정보원을 활용하라」 (8), 「한사람 이상의 정보원을 찾아가라」 (2),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정보원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하라」 (2), 「특정기사가 갖는 양면성을 고려해서 동일한 부류의 정보원들을 활용하라」 (1), 「정보원들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릴 경우를 유의하라」 (1)등의 예가 그것이다. 국민들이 언급한 규범을 언론측에서 언급한 경우는 극히 소수에 불과했다. 그 밖에 언론측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항목을 보면 다음과 같은것이였다. 「정보원의 평을 들을 때는 먼저 양해를 구하고 이들이 극구 사양할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라」, 「뉴스대상인물들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라」.

일부 국민들은 특정한 기사는 확고한 사실로 구성되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구체적인 것으로 알아낼 수 있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 결과 국민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정보를 보도하지마라」 (2)는 규범을 제시하는 반면에 언론측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뉴스제작과정에서의 중립성을 중요시하는 반면에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6. 보도활동과 관련된 규범

언론과 국민들간에 서로 바람직스럽게 보는 규범간에 빈도수면에서 균형상태를 보여주고는 있지만 이 범주에서도 역시 뚜렷한 차이는 발견되였다 총 31 개의 규범중에서 언론측에서만 언급하고 있는 것이 12 개였고 국민만이 언급하고있는 것은 14 개였다.

방송매체의 경우 FCC의 지침에 부응해서 점성술, 최면술, 음주, 도박, 이혼, 폭력, 형사상의 범죄등과 같이 유의해서 다뤄야만 할 주제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은 주제를 명시해 놓고 있었다. 한편 일반국민들은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당사자 모두에 대해 보도하라」 (29), 「전후사정 등을 함께 밝히라」 (21), 「센세이셔널하게 보도하지 마라」 (13), 「어떤 기사든 의도적으로 배제하지 마라」 (10), 「시의적절하게 보도하라」 (9)와 같은 규범에서 볼 수 있듯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절차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기사를 취급하라」 (2), 「좋은 뉴스든 나쁜 뉴스든 모두 보도하라」 (2), 「모든 기사를 똑같은 방식으로 판단하라」 (1) 등과 같은 보도과정과 관련된 규범의 경우,

국민들은 언급하고 있는 반면에 언론측에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한편 언론에서는 스스로 「지성을 갖춰야 하고」, 또 「공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NNC에 불만을 호소한 사람들의 경우는, 언론이 대안을 제시할 줄 알고(1), 남의 것을 흉내내지 않으며(1), 기록된 문서에 근거를 둔(1), 비판을 기대하고 있었다.

7. 보도의 표현방식과 관련된 규범

NNC의 불만호소인들은 언론이 어떠한 영향을 초래하는 가라는 문제보다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른 영향을 더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일반국민들은, 종교적인 문제를 표현할 때(7), 그리고 부유층을 묘사할 때에는(1)모순이 없도록 보도할 것과 과도한 형용사의 사용과 편향된 용어사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불만호소인이 기대하고 있는 표현방식과 관련된 규범으로는 「정보원의 말에다 다른 말을 덧붙이지마라」(4), 「인용할 때에는 철저히 인용하라」(2), 「선전적인 기법을 이용하지 마라」(1), 「특정한 기사내용 중 양당사자에 해당하는 내용은 동일한 지면과 동일한 시간에 보도하라」(1), 등이 있었다. 특히 이들은 올바른 어휘의 구사(1), 올바른 표현방식(1) 그리고 과학소식을 보도할 때에는 보다 적합한 표현방식을 재발해야 한다고 보고 있었다.

한편 방송부문의 강령에서는 「화면을 함께 내보낼 때에는 유의해야만 한다」고 규정해두고 있어서 일반국민의 기대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다른 규범에서는 의견이 일체되지 않고 있었다. 예컨대 방송매체측에서는 폭력사건을 상세하게 묘사한다든지 외설적으로 보도하거나, 시청자의 잠재의식을 건드리는 기법을 사용하거나 나아가서는 동물을 인간적으로 취급한다든지, 정치물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묘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규범이 불만호소인에게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었다. 방송부문의 윤리강령에서는 이처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은 역시 FCC의 규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8. 언론인의 전문지식과 관련된 규범

불만호소를 통해 왔을 때 이 범주의 규범 역시 언론측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나 국민들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호소인들은 언론종사자들의 지식수준이 낮아서 결과적으로 보도가 부정확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분야를 지적하고 있었다. 그 분야를 열거해 보면 과학(4), 형사소송법 체계(3), 전반적인 법 체계(2), 교육(1), 성차별(1), 사업(1), 안보 및 무기(1) 등이었다. 불만호소인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언론인들은 전반적으로 지식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하며(2), 전문지식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해야하며(2), 언론사내에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1)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언론의 윤리강령중에서 이와 같은 전문지식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전문가로부터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들으려고해야 한다고 언급한 강령은 SPJ와 SDX의 윤리강령뿐이었다.

9. 국민의 접근권과 관련된 규범

NNC 에 제기된 불만호소에서는 언론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보다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6 개의 규범이 제시되고 있지만 언론의 윤리강령에서는 인쇄매체와 관련된 강령에서만 반론권에 관한 규범을 찾아볼 수 있을 뿐이었다 (방송매체의 경우에는 강령에 이러한 사항을 명시해 두지 않고 있는 것은 FCC 의 규정에 등시문규정 (Equal Time Provision)과 형평의 원리(Fairness Doctrine)가 설정되어 있는 만큼 옥상옥이라 판단,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불만호소인들의 요구를 열거해보면 누구나 「언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4), 편집되지 않은 독자투고를 게재하는 방안(4), 특정기사가 보도된 후 이에 대한 뉴스대상인물의 반응을 게재하도록 요청하는 방안(3), 전반적인 반론권의 보장(1)등이었다.

V. 결론

언론이 지향해야 할 규범으로서 일반국민이 기대하고 있는 바는 무엇인가를 NNC 에 제기한 불만호소를 통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몇 가지 중요한 문제의 영역에서 일반국민이 기대하는바와 언론이 제정해 두고 있는 윤리강령 사이에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 행한 탐색적인 연구를 통해서 시도한 여러 가지 규범의 범주는 앞으로 언론활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를 엄격하게 연구하는 작업에 있어 하나의 개념들을 제공하게 되리라 믿는다. 이와 같은 연구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된다면 바람직한 언론활동의 규범과 관련된 인식의 갭을 줄이는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며 나아가서는 언론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일에 있어서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